성주군 담배소매인의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가. 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
 나.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기관 선정, 사실조사 위탁범위 등에 관한 대상 및 범위 등의 관련기준 신설

2. 주요내용
 가. 상위법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(안 제1조)
 ·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“제7조제3항” → “제7조제4항”
 나. 사실조사 위탁 범위 (안 제4조의2 신설)
 · 신청 영업소로부터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
 ·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
 다. 관련기관 등 선정기준 (안 제4조의3 신설)
 ·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 수준
 ·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 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〔기획감사실-6159(2018.8.6.)〕
 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5296(2018.8.13.)
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: 2018.10.8. ~2018.10.29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”을 “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”를 “사실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사실조사 위탁범위)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
2. 「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

제4조의3(관련기관 등의 선정)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 수준
2.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----------. ----------
제2조(정의)	
2.“관련기관 또는 단체(이하”관련기관 등“이라 한다)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	2.----------사실조사----------.
<신 설>	제4조의2(사실조사 위탁범위)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. 「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
<신 설>	제4조의3(관련기관 등의 선정)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 수준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